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6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 김수흥・김경만・김병욱

김성주 · 김태호 · 민홍철

박재호 • 박홍근 • 신동근

안호영・양경숙・양향자

윤준병 · 정성호 · 한병도

의원(15인)

제안이유

국세청장은 현행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제공 동의 이후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당초부터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동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해지가 없는 한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문제 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 참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실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까지 지급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 가.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이후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65조제6항 단서 신설).
- 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한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변경하고, 실 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4조의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이후 사망, 이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의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지급자료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제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165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

류"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 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 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 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국세청장은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이 후 사망, 이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가 정 보 제공 동의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양가족 에서 제외된 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자의 해당 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보험회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험· 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u>지</u> 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신 설>

| 자료 제출) <u>①</u> |
|-------------------------|
| |
| |
| |
| <u>근</u> |
| 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 |
| 서 제출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기한까지 |
| <u>이 경우 국세청</u> |
| 장은 해당 지급자료를 근로소득 |
| <u>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u> |
| •제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
| 라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
| 지급자료의 정보 제공에 대해 |
| 서는 제165조제6항을 준용한다. |
|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 |
| 제 증명서류"는 "실손의료보험 |
| 금 지급자료"로 본다. |